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박순이 의원 외 10인

2. 제안이유

- 구미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요 공공시설물은 구미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 중 그 범위를 한정하여 지정함(안 제2조)
- 포상금 지급대상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며, 포상금 지급 제한대상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손괴자에 대한 신고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포상금 지급과 지급 한도를 규정함(안 제6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함(안 제7조)
- 신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구미시영조물등의관리규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구미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 방지와 공공시설물 보호관리와 신고정신 함양을 위해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 제정내용은

- 조례는 총 9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은 손괴자를 신고한 자나 손괴자 규정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며
- 안 제4조 공무원,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업체 직원, 손괴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의 사전 인지 또는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 손괴자 등에 관해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사실 확인 후 신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 안 제6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괴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괴자에 의한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월 지급한도를 규정하였음

- 안 제7조 및 제8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즉시 환수토록 하였으며,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례 시행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피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이는 최근 개인 이기주의와 공동체 의식의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행위가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공공시설물 손괴에 대한 원인자 부담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시설물 훼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설물 복구를 위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 안 제6조에서 포상금 지급한도를 원상회복 비용의 100분의 10범위 내로 정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의 함양과는 별도로, 고가시설물의 경우 포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상한을 규정하려는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안 제5조 제2항에서 공공시설물 손괴 신고 접수 시 현장 확인 및 사실확인을 실시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시설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시설물별로 관리부서가 각각 분산되어 있으므로

향후 규칙 제정시 신고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기까지 소관부서 지정 및 처리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안 제6조 제3항에서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 지급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사안별 및 개인별 지급한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